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3. 27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3월 10일

나. 발 의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5년 3월 20일

라. 상정일자: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3. 24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노상욱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」 제7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인용을 「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 및 관련 자치법규 변경 등 정비됨에 따라 원활한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」 제7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인용을 「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
- 「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」 제7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인용을 「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
-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8조를 반영하여 문화원 수행사업 범위 구체화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및 서울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상위규정 불부합

자치법규 사항에 대하여 정비 및 보완하고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1조의(목적)에서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를 추가하여 영등포문화원 지원·육성의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.
- 안 제8조(문화원의 사업)에서는 변화하는 지역 문화 환경에 맞추어 문화원의 기능을 새롭게 확대·개편하는 내용이 추가된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8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원 수행 사업 범위를 재정립함.
- 안 제10조(회계관리 등)에서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」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으로의 관련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함.
- 안 제11조(사무의 검사·감독)에서는 「민법」 제37조,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를 추가하여 구청장이 보조금의 집행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사·감독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함.
- 안 제12조(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)는 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계획서의 제출 근거 규정이 「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」 제7조에서 삭제되고 「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규정됨에 따라 인용 법규명을 변경함.

○ 검토 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조례가 개정·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사문화된 조례안 등을 수정하여 적법성을 제고하므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494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3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」 제7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인용을 「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 및 관련 자치법규 변경 등 정비됨에 따라 원활한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」 제7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인용을 「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
- 나. 관련 자치법규 제명 변경 사항 반영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」 →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)
- 다.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8조를 반영하여 문화원 수행사업 범위 구체화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및 「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 - 3) 인권영향평가: 인권침해 가능성 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5. 1. 31. ~ 2. 20. / 21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3조제1항 및 제19조”를 “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3조제1항 및 제19조,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”로, “영등포문화원의 지원·육성에”를 “영등포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한다) 제4조제1항”을 “한다) 제4조제1항”으로, “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를 “영등포구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지원방법”을 “지원 방법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국내·외”를 “국내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호(종전의 제7호)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3.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

6.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

7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

제10조제1항 중 “지정”을 “지정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비치하고”를 “갖

추어 두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구가 지원한”을 “「민법」 제37조,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라”로, “장부·서류 그 밖에”를 “장부·서류 및 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검사결과”를 “검사 결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)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「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실적 및 사업 계획 등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의 지원·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3조제1항 및 제19조,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----- 영등포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--.
제2조(정의) “영등포문화원”(이하 “문화원”이라 한다)이란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원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한다) 제4조제1항----- ----- 영등포구----- ----- -----.
제4조(재산의 출연 등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 금전 및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.	제4조(재산의 출연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 그 밖의 ----- -----.
제6조(보조금의 지원 등) ① (생략) ② 보조금 등의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	제6조(보조금의 지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지원 방법 ----- ----- ----- -----.

제8조(문화원의 사업) 문화원은
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
수행한다.

1.·2. (생 략)

3. 지역문화행사의 개최

4. 지역전통문화의 국내·외 교
류

5. (생 략)

6.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
업 및 사회교육활동

<신 설>

7.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
수 있는 사업

제10조(회계관리 등) ① 문화원장
은 출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
· 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
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
운영하여야 한다.

② 회계책임자는 출연금 등을
적정하게 관리·운용하기 위하
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
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
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
하여야 한다.

제8조(문화원의 사업)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
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

4. ----- 국내외 -----
--

5. (현행과 같음)

6.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
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
육 사업 지원

7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
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
문화활동 지원

8. 그 밖에 -----
--

제10조(회계관리 등) ① -----

----- 지정
하여 -----.

② -----

----- 갖추어 두고 -

-----.

③ 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이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④ 제9조제1항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1조(사무의 검사·감독) ① 구청장은 구가 지원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·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

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(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)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「지

③ -----

----- 그 밖의 -----

-----.

④ -----
----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.

제11조(사무의 검사·감독) ① --
---- 「민법」 제37조,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라 -----

----- 장부·서류 및 그 밖의 -----
-----.

② ----- 검사 결과 -----

-----.

③ -----
없으면 -----

--.

제12조(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)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「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

<u>방문회원진흥법 시행령」 제7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</u>	<u>립·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<삭 제></u>
---	--